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11
----------	-------

발의연월일 : 2023. 1. 3.

발의자 : 박성중 · 권성동 · 서범수
서일준 · 유경준 · 윤두현
정희용 · 최춘식 · 허은아
홍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

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정부는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는 방식

③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 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 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정부는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 · 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

<신 설>

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